

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정영진**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사인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성
- III.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
- IV. 결 론

* 본 논문은 제60회 항공우주정책·법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저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저자가 소속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무관한 것임을 밝힙니다.

** 법학박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정책팀 선임연구원, E-Mail : yjjung@kari.re.kr

I. 문제의 제기

책임은 국제법의 존재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이자 국제법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치이다¹⁾. 국제법상 어떤 실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국제 법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이다.²⁾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국제공법은 국가 간의 법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인 국가만이 국제법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1949년 유엔 근무 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³⁾에서 유엔은 국제법의 주체로서 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국제 청구를 통해 국제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⁴⁾, 국제법의 주체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오랫동안 국제법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개인과 기업도 형사 분야와 투자 분야에서는 국제법의 주체로서 국제법의 다른 주체에 대하여 책임을 원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주체가 아닌 민간 기업에 의한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 우주물체의 발사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은 그동안 국제법의 분과인 국제우주법⁵⁾에서 다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상기 국가의

1) Alain Pellet, "The definition of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in James Crawford · Alain Pellet · Simon Olleson(ed.),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xford/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3.

2) *Ibid.*, p.6.

3)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I.C.J. Reports 1949*, p.174.

4) *Ibid.*, p.179.

5) 국제우주법은 일반적으로 유엔 5개 조약 그리고 유엔 5개 원칙 및 선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유엔 우주 관련 5개 조약]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하여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우주조약'으로 약칭), UN, *Treaties Series*, vol.610, No.8843, 비준국 105개국, 서명국 24개국; 우주인의 구조와 귀환 및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구조협정'으로 약칭), UN, *Treaties Series*, vol.672, No.9574, 비준국 95개국, 서명국 24개국;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배상협약'으로 약칭), UN, *Treaties Series*, vol.961, No.13810, 비준국 94개국, 서명국 20개국;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협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등록협약'으로 약칭), UN, *Treaties Series*, vol.2013, No.15020, 비준국 62개국, 서명국 4개국; 달과 기타 천체에서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협정(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달협정'으로 약칭), UN, *Treaties Series*, vol.1363, No.23002, 비준국 17개국, 서명국 4개국.

국제책임을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로써 다루어 왔다.

최근 스페이스엑스의 팰컨 헤비(Falcon Heavy) 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⁶⁾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은 통신위성 등의 제조와 운영, 우주발사체의 발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 등의 심우주탐사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의 예외로써 간주하기에는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이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우주활동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을 국제우주법의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고 일반 국제법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우주조약 제3조가 “조약 당사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여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 활동을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상, 이러한 접근법은 국제우주법과도 일치한다.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국제 판례, 국제관습, 학술 등에 기초하여 2001년 성문화 작업을 종료한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이하 ‘국가책임 초안’으로 약칭))’⁷⁾은 제2조에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유엔 우주 관련 5개 원칙 및 선언]

우주의 이용과 탐사에 관한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 원칙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UN GA Res. 1962 (XVIII); 국제 직접 위성방송을 위한 국가의 인공위성 이용을 규제하는 원칙(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UN GA Res. 37/92; 우주에서 지구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Outer Space), UN GA Res. 41/65; 외기권에서의 핵 동력원 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UN GA Res. 47/68;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국제 협력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UN GA Res. 51/122.

- 6) 박근태, “머스크, 지구 최강 로켓 발사... 화성에 한 발 더”, 『한국경제』(2018.2.8.), A17면.
2018년 2월 6일 미국의 민간기업인 스페이스엑스에 의하여 우주발사체 팰컨 헤비(Falcon Heavy)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팰컨 헤비의 개발과 발사를 주도한 스페이스엑스와 테슬라모터스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대형 팰컨 헤비를 이용해 2024년까지 인간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 7) UN Doc. A/56/10. 국제법위원회의 이 보고서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주석서가 포함되어 있다.

제2조(일국의 국제위법행위 요소)

작위 또는 부작위로 구성되는 행위가

(a) 국제법 하에서 국가에 귀속될 수 있을 때; 그리고

(b)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때

국가의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한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여부를 귀속성(Ⅱ)과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Ⅲ) 측면에서 검토한다.

Ⅱ. 사인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성

국가기관의 행위는 상업적 또는 관리적 행위인지,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기관의 성격과 그 기관이 가진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⁸⁾ 문제는 일반 국제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즉 개인 및 민간 기업의 행위가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느냐이다 (1). 사인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면, 이러한 법규가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사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 (3) 이를 위해서는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사인에 고유한 국가책임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2).

1. 일반 국제법상 사인행위의 귀속성

국가책임 초안은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국가의 명령에 의하거나 국가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른 행위, 정부 부재 또는 태만 속에서 수행된 사인의 행위, 그리고 사후에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국가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8) 국가책임 초안 제4조.

(1) 국가의 명령, 지시 또는 통제에 따른 행위

국가책임 초안 제8조

일국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통제된 행위

개인 또는 집단이 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국가의 명령에 의하거나 국가의 지시(direction) 또는 통제(control)에 따라 행동한다면,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8조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명령에 의한’ 행위와 ‘국가의 지휘 또는 통제에 따른’ 행위로 분류한다. ‘국가의 지휘 또는 통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책임 초안은 주석서에서 국제 판례가 국가의 허가를 받은 행위의 국가 귀속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경찰 및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보조자’로써 고용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이웃 국가에 파견되는 ‘자원봉사자’를 그 예로 들고 있다.⁹⁾

국가책임 초안은 ‘지휘’ 또는 ‘통제’의 법적 의미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지만, 몇몇 국제 판례에서 상기 용어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준군사적 활동 사건¹⁰⁾에서 미국의 국가책임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의한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¹¹⁾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유고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항소부는 타디치 사건¹²⁾에서 “통제의 정도는 개별적인 사건의 실제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¹³⁾고 언급하면서 유고슬라비아 당국의 군대에 대한 통제의 정도는 “단순한 재정지원·군대의 배치·군사적 기능의 계획 및 감독에 대한 개입을 넘는 전반적 통제(overall control)”¹⁴⁾라고 판시하였다.

9) UN Doc. A/56/10, *op cit*, p.74, para.2.

10)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14.

11) *Ibid.*, pp.62-65.

12) *Prosecutor v. Tadic*, (1999) I.L.M., vol.38, p.1518.

13) *Ibid.*, p.1541.

14) *Ibid.*, p.1546.

(2) 정부의 부재 또는 태만 속에서 수행된 사인의 행위

국가책임 초안 제9조

정부의 부재 또는 태만 속에서 수행된 행위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가 정부의 부재 또는 태만 속에서 공권력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국제법상 일국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9조가 가정하는 ‘상황’은 혁명, 무력충돌, 외국 군대에 의한 점령 등의 기간 중에 평상시의 당국이 해산되거나 일시적으로 당국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개인 또는 집단이 공권력의 요소를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¹⁵⁾

(3) 사후 국가의 추인

국가책임 초안 제11조

일국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로 인정되고 수락된 행위

이전 조문들에서 국가에 귀속될 수 없는 행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문제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고 채택한다면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제11조는 국가를 대신하지 않는 사인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고 채택(acknowledges and adopts)’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고 채택한다는 것은 국가가 문제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예외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는 국가관행과 국제 관례¹⁶⁾를 통해서도 인정되어 왔다.

15) UN Doc. A/56/10, *op cit*, p.74.

16) *Lighthouses arbitration, UNRIAA, VII, XII, 1956, p.155;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I.C.J. Reports 1980, p.3.*

2. 국제우주법상 사인행위의 귀속성

우주조약 제6조는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에 관한 성문화 작업이 1955년에 시작되고 첫 번째 특별보고자인 Garcia-Amador의 보고서¹⁷⁾가 1961년에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우주조약 제6조는 매우 급진적이라 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을 간략히 살펴본 후 제6조의 교섭 과정 등을 상세히 분석한다.

(1) 우주조약 제6조

조약 당사국들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여 우주에서 국내 활동이 정부기관(governmental agencies) 또는 비정부 기관(non-governmental entities)에 의하여 수행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국내 활동이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도록 국제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여 우주에서 비정부기관의 활동은 이 조약의 적절한 당사국에 의한 허가(authorization)와 지속적인 감시(continuing supervision)를 필요로 한다. (...)”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주조약 제6조의 규정을 근거로 ‘비정부 기관’ 즉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을 일반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라고 설명한다. 우주조약 제6조는 국가책임 초안이 사인 행위의 국가 귀속성을 인정하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인의 활동은 “적절한 당사국에 의한 허가과 지속적인 감시를 필요로 한다”는 우주조약 제6조 제2문의 규정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은 사인이 우주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인이 허가 요건에 따라 우주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국가가 계속해서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허가’와 ‘지속적인 감시’가 사인과 국가 간에 어떠한 공식적인 관계를 맺어준다고 유추할 수 있다. 공식적인 관계가 받아들여진다면 귀속성 요건에 한해서는 우주조약 제6조가 일반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귀속성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17) UN Doc. A/CN.4/134 and Add. 1.

사항에 대한 분석이 선결되어야 한다. 우주조약 제6조에서 국가가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부담하게 된 배경과 ‘허가’와 ‘지속적인 감시’의 의미가 무엇인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6조의 작성 당시의 교섭기록 및 사정을¹⁸⁾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주조약 제6조는 1963년 법원칙 선언 제5항을 문구의 수정 없이 그대로 규정하기 때문에, 제5항의 작성 기록 및 사정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인이 규정된 배경

1963년 법원칙 선언 제5항의 작성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은 우주활동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본격적인 논쟁은 1962년 6월 구소련이 제안한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원칙 선언안’¹⁹⁾의 제7항에서 시작되었다.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활동은 오로지 국가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국가는 자신이 우주에 발사한 물체에 대하여 주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구소련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미국은 공공 용도가 아닌 텔레비전 영상의 전송 목적으로 1962년 7월 통신위성인 Telstar를 이미 발사하였고, 우주통신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위성법²⁰⁾을 같은 해 8월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통신위성법은 섹션 301에서 정부기관이 아닌 영리 목적의 통신위성기업의 설립을 허가하였고, 1963년 COMSAT(Communication Satellite Corporation)이라는 기업이 설립되었다. COMSAT은 1965년 4월 세계의 첫 상업용 정지궤도 통신위성인 Intelsat 1을 발사하였다. 미국은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면서, 구소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1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UN, *Treaties Series*, vol. 1155, No.18232. 비준국 71개국, 서명국 45개국, 제32조.

19) UN Doc A/AC. 105/ C.2/ L.1;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62, p.39. “Activities pertaining to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should be carried out exclusively by States; States should retain their sovereign rights to object they launched into outer space.”

20) Communication Satellite Act of 1962, Public Law 87-624, Aug. 31, 1962; *Havard Law Review Association*, “The communication satellite act of 1962, *Havard Law Review*, vol.76, No.2, 1962, pp.156-168.

“자국의 영토로부터, 자국의 지원 또는 허가를 받아 우주 비행체가 발사된 국가는 발사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지고 국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²¹⁾

우주활동의 주체를 둘러싼 구소련과 미국 간 논쟁의 이면에는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깔려있었다. 양국의 첨예한 대립을 중재하기 위하여 캐나다, 인도, 일본, 영국 등에 의하여 다양한 중재안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아래와 같이 개인 및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을 허용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모든 국가는, 국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자국 국민을 위하여,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제법에 따라 그리고 이 선언에서 확인된 원칙들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²²⁾

뒤이어 캐나다는 사인의 우주활동을 허용하는 요건으로 국가의 허가를 제시하였으나,²³⁾ 구소련은 모든 유형의 우주활동은 오직 국가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²⁴⁾

냉전시대 미소 간 우주경쟁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정상 간 우주협력 논의는 계속되었고 1962년 2월 20일 미국 우주비행사 John Glenn의 지구궤도 비행 직후 양국 간 협력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미국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부국장인 Hugh Dryden과 소련 과학자인 Blagonravov는 인공위성의 기상 자료 교환, 기상위성의 공동발사 및 지구자기장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6월 미국항공우주국과 소련의 과학아카데미 간에 우주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²⁵⁾ 양해각서의 체결로 우주 협력에 있어서 양국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Telstar가 미국항공우주국에 의하여 운용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인의 우주활동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소련은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허가과 국가의 국제책임이라

21) UN Doc A/ AC.1/881, para.6.

22) UN Doc A/ AC.1/879, para.4.

23) UN Doc A/ AC. 105/ C.2/SR.21, p.6.

24) UN Doc A/ AC. 105/ L.6, para.6.

25) https://www.nasa.gov/50th/50th_magazine/coldWarCoOp.html (2018. 2. 22. 최종방문).

는 중재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미소 간에 합의안²⁶⁾이 제출되었고, 1962년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mmittee of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²⁷⁾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3. 우주조약 제6조의 ‘허가’와 ‘지속적인 감독’의 의미

우주조약 제6조의 ‘허가’와 ‘지속적인 감독’이 국가책임 초안 제8조의 ‘국가의 지휘 또는 통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주조약 제6조의 두 용어가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상기 용어들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 및 구체적인 해석은 없지만, ‘허가’와 ‘지속적인 감독’을 사인의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입법을 제정하라는 것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이견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법률소위원회는 2013년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권고(이하 ‘국내입법 권고’로 약칭)²⁸⁾를 채택하였다. 국내입법 권고의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내 규제체계의 대상이 되는 우주활동의 범위는 물체의 발사와 우주로부터 지구 귀환, 발사 또는 재진입 시설 운용, 그리고 궤도상 우주물체의 운영과 통제를 적절하게 포함할 수 있다; 기타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우주비행체의 설계와 제조, 우주과학기술의 활용, 그리고 탐사활동과 연구가 포함될 수 있다.

2. 유엔 우주 관련 조약 상 발사국과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국가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는 자국 영토에서 수행되는 우주활동 및 그 이외의 지역에서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는 자국민에 의해 수행되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내 관할권을 결정

26) “States bea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whether carried on by governmental agencies or by non-governmental entities, and for assuring that national activities are carried on in conformity with principle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in outer space shall require authorization and continuing supervision by State concerned.”

27) UN GA Res. 1472(XIV),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d of outer space.

28) UN GA Resolution 68/74, Recommendations on national legislation relevant to the peaceful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가 그 활동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국가는 중복 요건을 삼가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우주물체 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피해야 한다.

3. 우주활동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허가를 요구한다; 허가의 부여, 변경,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요건과 기관 및 절차는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수립하여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허가 부여와 특별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허가를 위해 별도의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4. 허가 요건은 유엔 우주 관련 조약과 관련 국제 문서상 국가의 국제의무 및 약속과 일치하여야 하며, 국가의 안보 및 외교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허가 요건은 안전하게 그리고 사람, 환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수행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건은 신청자의 기술 자격과 관련될 수 있으며,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특히 유엔 우주평화적 이용위원회의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과 같은 안전과 기술 표준을 포함할 수 있다.

5. 적절한 절차는, 예를 들면 현장 심사 또는 일반적인 보고 체계 등 허가받은 우주활동의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확보해야 한다; 시행 방법은 행정 조치 또는 제재제도를 적절하게 포함할 수 있다.

6.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국내 등록부는 적절한 국내 기관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우주물체 등록협약, 1961년 12월 20일 총회 결의 1721(XVI) B와 2007년 12월 17일 총회 결의 62/101를 포함하는 적용 가능한 국제 문서에 따라, 국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내 기관에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주물체 사업자는 우주물체의 주요 특징에 대한 일체의 변경에 대한 정보를, 특히 기능하지 않은 우주물체의 경우,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7. 국가가 국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을 허가 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8. 비정부 우주활동의 지속적인 감시는 궤도에서 우주물체의 소유권 또는 통제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국내 규제는 허가 요건 또는 우주물체 운용의 변경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국내법의 적용 범위, 허가의 요건, 우주물체 등록, 손해배상 및 보험, 궤도에서 우주물체의 소유권 이전 및 통제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국내입법 권고에 비추어, 우주조약 제6조의 ‘허가’와 ‘지속적인 감독’이 국가책임 초안 제8조의 ‘국가의 지휘 또는 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Ⅲ.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

국가책임 초안 제2조에 따라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행위가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따라서 국가에 귀속되는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에게 부과되는 국제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

1. 일반 국제법상 국제의무의 위반

국가책임 초안 제12조는 국제의무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제의무 위반의 존재

일국의 행위가 국제의무에 의하여, 국제의무의 연원 또는 성격을 불문하고, 국가에게 요구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일국에 의한 국제의무 위반이 있다.

즉, 국제의무 위반은 국제의무에 의하여 국가에게 요구되는 행위와 국가가 실제로 채택한 행위 간에 불일치를 말한다.²⁹⁾ 그렇다면 국가의 국제의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에 대해 국가책임 초안 제12조는 ‘국제의무의 연원을 불문하고’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제의무는 관습국제법, 조약 또는 국제 법질서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으며, 이는 다수의 국제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는 엘시(Elletronica Sicula S.p.A(ELSI)) 사건³⁰⁾에서 “징용명령이 FCN 조약에 따른 것인지”를 제기한 바와 같이,³¹⁾ 조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을 국제의무의 위반으로 본다.

의무의 불이행은 작위 이외에 부작위에 의한 행위도 포함되는가? 책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위 상황으로부터 부작위를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코르푸 해협 사건³²⁾에서 알바니아가 자국 영해에 기뢰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알았어야 했으며 알바니아가 제3국에게 기뢰의 존재를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바니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충분하다고 판시함으로써³³⁾ 부작위를 의무의 불이행으로 보았다.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³⁴⁾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에 의한 이란의 책임을 수반한다고 판시하였다³⁵⁾.

2. 국제우주법상 국제의무의 위반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주조약 제6조에 규정된 국가에 의한 사인의 우주활동의 허가 또는 지속적인 감독, 그리고 우주조약 제8조에 규정된 사인이 발사한 우주물체의 등록이다.

29)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95;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69*, p.3, pp.38-39; *Rainbow Warrior(New Zealand/France), UNRIAA*, vol. XX, 1990, p.217, p.251.

30) *Elletronica Sicula S.p.A(ELSI), Judgment, I.C.J. Reports 1989*, p.15.

31) *Ibid.*, p.50.

32) *Corfu Channel,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49*, p.4.

33) *Ibid.*, pp.22-23.

34)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ment, I.C.J. Reports 1980*, p.3.

35) *Ibid.*, pp.31-32.

(1) ‘허가’ 또는 ‘지속적 감독’을 위한 국내법 제정 의무

국제 판례 및 국가책임 초안에 따라 조약 규정의 불이행이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며, 조약 규정이 조약 당사국에게 입법 등과 같은 국내이행조치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에 입법을 하지 않는 부작용은 국제의무의 위반이 된다.

따라서 우주조약 당사국은 자국민의 우주활동을 허가하고 감독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국제의무를 진다. 이러한 국제의무는 사인에 의하여 우주활동이 수행되는 당사국에게만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조약 당사국이라 하더라도 규제 대상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국내 입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사인에 의한 우주활동의 시작과 함께 허가과 지속적 감독을 위한 국내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대학이 교육용으로 개발한 초소형위성의 발사를 계기로 법을 제정하였다.

유엔 우주업무국(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의 “국내 우주법·규제 컬렉션(Collection of national space laws and regulations)”³⁶⁾에 따르면 현재 총 19개국³⁷⁾이 사인의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호주³⁷⁾, 오스트리아³⁸⁾, 벨기에³⁹⁾, 브라질⁴⁰⁾, 캐나다⁴¹⁾, 프랑스⁴²⁾, 독일⁴³⁾, 일본⁴⁴⁾,

36) <http://www.unoosa.org/oosa/en/ourwork/spacelaw/nationalspacelaw/index.html> (2018. 2. 22. 최종방문).

37) Space Activities Act 1998, Act No. 123 of 1998, Space Activities Regulation 2001, Statutory Rules 2001 No. 186.

38) Austrian Federal Law on the Authorization of Space Activ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Space Registry, BGBl. I Nr. 132/2001; Regulation of the Federal Minister for Transport, Innovation and Technology in Implementation of the Federal Law on the Authorisation of Space Activ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Space Registry, BGBl. II No. 36/2015.

39) Law of 17 September 2005 on the Activities of Launching, Flight Operation or Guidance of Space Objects, B.O.J. of 15 January 2014.

40) Law No. 8.854 of 10 February 1994, Law Establishing the Brazilian Space Agency.

41) Remote Sensing Space System Act, S.C. 2005, c. 45; Remote Sensing Space System Regulation, SOR/2007-66; Radiocommunication Act; R.S.C., 1985, c. R-2; Civil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S.C. 1999, c. 35; Canadian Space Agency Act, S.C. 1990, C. 13.

42) 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

43) Gesetz zur Uebertragung von Verwaltungsaufgaben auf dem Gebiet der Raumfahrt, 22.08.1998; Act to give Protection against the Security Risk to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y the Dissemination of High-Grade Earth Remote Sensing Data; Gesetz zur Übertragung von Verwaltungsaufgaben auf dem Gebiet der Raumfahrt, 22.08.1998; Satellite Data Security Act.

44)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平成28年11月16日(号外 第252号); 衛星リモ-

카자흐스탄⁴⁵⁾, 네덜란드⁴⁶⁾, 노르웨이⁴⁷⁾, 대한민국⁴⁸⁾, 러시아⁴⁹⁾, 남아프리카공화국⁵⁰⁾, 스페인⁵¹⁾, 스웨덴⁵²⁾, 우크라이나⁵³⁾, 영국⁵⁴⁾, 미국⁵⁵⁾.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은 제3조에서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의 준수를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⁵⁶⁾와 제13조⁵⁷⁾에

トセンシング記録の適正な取扱いの確保に關する法律, 官報 平成28年11月16日(号外 第252号).

- 45)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pace Activities 6 January, 2012 No. 528-IV.
 46) Rules Concerning Space Activ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gistry of Space Objects (Space Activities Act), BILL 13.06.06; Decree of 19 January 2015 expanding the scope of the Space Activities Act to include the control of unguided satellites (Unguided Satellite Decree).
 47) Act on launching objects from Norwegian territory etc. into outer space, 13 June. No. 38. 1969.
 48) 우주개발진흥법, 법률 제15243호; 우주손해배상법, 법률 제14839호.
 49)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about space activities, Decree No. 5663-1 of the Russian House of Soviets.
 50) Space Affairs Amendment Act, No. 64 of October 1995.
 51) Royal Decree 278/1995 establishing in the Kingdom of Spain of the Registry foreseen in the Convention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2nd November 1974.
 52) Act on Space Activities, 1982:963; Decree on Space Activities, 1982:1069.
 53) Ordinance of the Supreme Soviet of Ukraine on Space Activity Law of Ukraine of 15 November 1996, VVRU, 1997, p.2.
 54) Outer Space Act 1986, S.I. 2006/2959.
 55) The Commercial Space Launch Act; Land Remote Sensing Act of 1992.
 56)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57) 제13조(발사허가의 취소 및 정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 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서 우주물체의 발사 허가 및 허가의 취소 등 지속적인 감시를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우주물체 등록 의무

우주조약 제6조와 손해 발생 시 국가책임에 관한 제7조에 뒤이어 제8조가 우주물체의 국내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주물체 등록협약 제2조는 국내 등록과 함께 국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이라는 행위는 우주물체와 국가 간에 어떠한 법적 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에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 우주물체 등록의 법적 의미

우주조약 제8조 제1문

우주에 발사된 물체가 자국의 등록부에 등록된 조약의 당사국은, 이 물체가 우주 또는 천체에 있는 동안, 이 물체 및 이 물체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권과 통제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국가가 사인의 우주활동을 ‘허가’ 한 후 발사된 우주물체를 국가의 등록부에 등록하는 행위는 국가와 사인 간에 견고한 법적 관계를 확인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주조약 제8조 제1문은 등록국에게 발사된 우주물체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우주물체 등록협약은 제2조(58)에서 보다 상세한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의 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를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8) 우주물체 등록협약 제2조

1. 우주물체가 지구궤도 또는 그 이권에 발사된 때, 발사국은 관리하여야 하는 적절한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각 발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등록부의 설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규정을 두고 있다.

우주물체의 등록은 항공기 및 선박의 등록과 유사하다. 국제민간항공협약⁵⁹⁾ 제19조에 따라 “체약국에 있어서 항공기의 등록은 (...) 그 국가의 법률과 규칙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등록된 “항공기는 등록국의 국적을 보유한다”⁶⁰⁾. 1958년 공해에 관한 협약⁶¹⁾ 제5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의 선박의 등록 및 자국 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해야 한다.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은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다. 그 국가와 선박 간에는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91조 제1항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해양법과 항공법에서 수락된 ‘진정한 관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우주물체와 우주물체의 등록국 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등과는 달리 우주조약과 우주물체 등록협약에는 등록을 통해 우주물체에 국적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관련’은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공해에 관한 협약초안 작성 과정에서 1955년 네덜란드에 의해 제안되었고⁶²⁾, 국제법위원회는 1956년 “타국들이 선박의 국가 관련 특징(national character)을 인식하기 위하여 국가와 선박 간에 진정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⁶³⁾는 최종안을 작성하였다. 1958년 제1차 해양법회의에서 진정한 관련을 둘러싸고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과 같은 전통적인 해양국들과 브라질, 그리스, 과테말라, 인도, 레바논, 멕시코, 우루과이, 미국 등과 같은 국가들과 간에 찬반이 있었다. 전자 국가들은 공해상에서 공공질서의 통제와 유지를 위해서는 선박과 국적국 간에 진정한 관련이

2. 모든 우주물체에 관해서 발사국이 둘 또는 그 이상일 경우, 발사국들은,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하여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제8조의 규정을 유념하고 우주물체와 이 물체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에 대하여 발사국들 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적절한 협정을 저해함이 없이, 그들 중 일국이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3. 각 등록부의 내용 및 등록부가 유지되는 조건은 관련 등록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59)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UN *Treaty Series*, vol.296, No.102.

60)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7조.

61) Convention on the High Seas, UN *Treaty Series*, vol.450, No.6465.

62)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5, vol. II, pp.22-23.

63)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6, vol. II, p.256.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후자의 국가들은 진정한 관련의 기준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어의 모호성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가들은 선박과 국적국 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국에 의한 효율적인 관할권과 통제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다. 결국 이탈리아의 제안으로 ‘진정한 관련’이라는 표현에 바로 뒤이어 “국가는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그리고 사회적 사안에서 관할권과 통제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문장을 삽입함으로써 현재의 조문이 완성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노테봄 사건⁶⁴⁾에서 “국적은 그 기초로써 (...) 생활의 진정한 유대(a genuine connection of existence)를 가진 법적 유대”⁶⁵⁾라고 판시하면서 ‘진정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제법위원회가 네덜란드의 제안에 따라 ‘진정한 관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노테봄 사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것에 반대 의견이 없는 듯하다.⁶⁶⁾ 다시 말하면,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적과 선박 또는 항공기가 등록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의 근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단 국적의 부여 요건, 관리 등의 방법이 사람 또는 물체에 따라 다를 뿐이다. 예를 들면, 노테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진정한 유대를 수립하는 요소 즉 국적 부여 요건으로 사업상 이해관계, 관련국에서의 거주, 국가와의 일반적인 정서적 유대, 가족관계 등을 예시한 것이다.⁶⁷⁾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진정한 관련’이란 국가가 자국에 등록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할권과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주조약 제8조 제1문을 근거로, 선박과 항공기에 적용되는 ‘진정한 관련’이 우주물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주물체의 등록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발사국과 우주물체 간에 일련의 귀속성을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⁶⁸⁾

64) *The Nottebohm Case, Judgment, I.C.J. Reports 1955*, p.4.

65) *Ibid.*, p.23.

66) Robin R Churchill, *The meaning of the “genuine link” requirement in relation to the nationality of ships*,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2000, p.22.

67) *The Nottebohm Case, op cit*, p.22.

68) Hobe·Schmidt·Tedd·Schrogl(ed.), *Cologne Commentary on Space Law, Volume I Outer Space Treaty* (Köln : Carl Heymanns Verlag, 2009), p.147.

(나) 우주물체 등록에 관한 국가 관행

우주물체 등록의 절차적 근거로 우주물체 등록협약과 유엔 총회 결의 1721B(XVI)⁶⁹⁾가 있다. 우주물체 등록협약 발효 전에는 결의 1721B(XVI)에 근거하여 국가가 우주물체를 등록하였다. 1962년 3월 7일 미국이 상기 결의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우주물체를 유엔에 등록하였고⁷⁰⁾, 같은 해 3월 24일 구소련이 자국의 우주물체를 등록하였다⁷¹⁾. 미국은 현재까지 2548개의 우주물체를 등록하였고 그 중 223개가 결의에 따라 등록되었다.⁷²⁾ 1977년 7월 우주물체 등록협약을 비준한 러시아는 지금까지 총 3493개의 우주물체를 등록하였고 그 중 115개가 결의에 근거하여 등록되었다.⁷³⁾ 현재까지 발사된 우주물체의 92% 이상이 등록되었고,⁷⁴⁾ 총 55개국과 두 곳의 정부 간 국제기구⁷⁵⁾가 유엔에 우주물체를 등록한 사실을 감안하면,⁷⁶⁾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거의 모든 국가가 등록이라는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물체 등록협약에 따라 우주물체의 국내등록⁷⁷⁾과 국제등록⁷⁸⁾을 의무화하고 있다.

69) UN GA Res. 1721(XVI)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70) UN Doc. A/AC.105/INF.1.

71) UN Doc. A/AC.105/INF.2.

72) <http://www.unoosa.org/oosa/en/spaceobjectregister/submissions/usa.html> (2018. 2. 22. 최종방문).

73) <http://www.unoosa.org/oosa/en/spaceobjectregister/submissions/ru.html> (2018. 2. 22. 최종방문).

74) <http://www.unoosa.org/oosa/en/spaceobjectregister/index.html> (2018. 2. 22. 최종방문).

75) 유럽우주기구(European Space Agency), 유럽기상위성개발기구(European Organiz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Meteorological Satellite).

76) <http://www.unoosa.org/oosa/en/spaceobjectregister/submissions/states-organisations.html> (2018. 2. 22. 최종방문).

77) 제8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 ①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외에서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IV. 결론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 우주물체의 발사 및 발사 후 운영을 규제하는 국제 우주법은 국제법의 분과이다. 1950년대 말부터 우주활동에 관한 유엔 총회의 원칙이 채택되었고 1967년에 우주활동의 헌장(*Magna Carta*)인 우주조약이 체결된 점을 감안하면 국제우주법의 점진적 발전 및 성문화가 국제법의 다른 분과에 비하여 늦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우주법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우주가 냉전 시대 미소 간 군비경쟁의 장으로 간주되면서 규범보다는 기술에 집중되었다. 둘째, 소수의 국가만이 적극적인 우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련 규범의 형성에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도 인공위성과 우주발사체를 동시에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국가는 10여 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주발사체의 발사 능력은 없지만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는 60여개에 달한다. 아울러 최근 들어 개인, 대학, 민간 기업 등 사인에 의한 인공위성의 발사 또는 운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주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우주조약 제3조를 항상 상기하여야 한다.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주조약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된 인공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8) 제9조(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이 있으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과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 규정된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귀속성과 국제의무 위반이라는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다시 말하면,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규범을 예외로 다룰 경우 그 규범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일 수 있지만 그 규범을 일반론적인 법 이론에서 접근할 수 있다면 연구의 폭은 매우 넓을 것이다.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을 국제우주법의 관련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 이론으로 분석하고 이 이론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 논문이 국제우주법의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 _____, “『사실상 기관』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하)”, 『사법행정』 제36권 제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 김한택,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12.
- 박원화, 『국제항공법』, 제4판, 한국학술정보, 2016.
- 박원화·정영진, 『우주법』, 제4판, 퍼플, 2013.
- 이영진,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12.
- 정인섭, 『신국제법 강의』, 제8판, 박영사, 2018.

[외국 문헌]

- Alain Pellet, “The definition of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in James Crawford · Alain Pellet · Simon Olleson(ed.),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xford/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Alain Pellet·P. Daillier·M. Forteau, *Droit International Public 8th edition*, L.G.D.J, (2009).
- David 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Thomson Reuters, (2010).
- Francis Lyall·Paul B. Larsen, *Space Law: A Treaties*, Ashgate, (2009).
- Gbenga Oduntan,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n the Airspace and Outer Space: Legal Criteria for spatial and delimitation*, Routledge, (2012).
-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The communication satellite act of 1962*, Harvard Law Review, vol. 76, No.2, (1962).

- H. E. Anderson III, *The Nationality of Ships and Flags of Convenience: Economics, Politics and Alternatives*, Tulane Maritime Law Journal, vol.21, No. 1, (1996)
- Hobe·Schmidt·Tedd·Schrogl(ed.), *Cologne Commentary on Space Law: Volume I Outer Space Treaty*, Carl Heymanns Verlag, (2009).
- Hobe·Schmidt·Tedd·Schrogl(ed.), *Cologne Commentary on Space Law: Volume II Outer Space Treaty*, Carl Heymanns Verlag, (2013).
- H. W. Verzijl,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Geneva, 1958*,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6, No. (1959).
-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James Crawford,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Introduction, text and commenta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Jean-Pierre Cot·Alain Pellet·Mathia Forteau, *La Charte des Nations Unies Commentaire article par article, 3e edition*, Economica, (2005).
- Michael Milde, *Essential air and space law*, Eleven International Publishing, (2008).
- M. H. Nordquist (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III*, Kluwer Law International, (1985).
- M. H. Nordquist (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IV*,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9).
- Nanadasiri Jasentuliyana,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he United N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 Ram S, Jakhu, *National regulation of space activities*, Springer, (2010).
- Robin R Churchill, *The meaning of the "genuine link" requirement in relation to the nationality of ships*,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2000).

[인터넷 사이트]

<http://www.oosa.org/oosa/en/ourwork/spacelaw/treaties/travaux-preparatoires/declaration-of-legal-principles.html> : 1963년 법원칙 선언 교섭기록

<http://www.oosa.org/oosa/en/ourwork/spacelaw/treaties/travaux-preparatoires/outerspacetreaty.html> : 우주조약 교섭기록

<http://www.oosa.org/oosa/en/ourwork/spacelaw/treaties/travaux-preparatoires/registration-convention.html> : 우주물체 등록협약 교섭기록

초 록

전통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인 국가만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국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및 민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다. 이를 성문화한 것이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 등 사인에 의한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의 발사 및 운영 등에 관한 국가책임은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로써 다루어져 왔다. 즉,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항상 우주조약 등 국제우주법의 체계 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2018년 2월 6일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엑스의 팰컨 헤비 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은 통신위성 등의 제조와 운영, 우주발사체의 발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 등의 심우주탐사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의 예외로써 다루기에는 민간 기업이 매우 광범위한 우주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활동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을 국제우주법의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고 일반 국제법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기초하여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국가책임, 민간 기업, 우주활동, 귀속성, 우주물체 등록

Abstract

The Constituent Elements of State Responsibility Regarding Space Activities of Private Ent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Yung-Jin, Jung*

In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a state was internationally responsible only for its activities. With the diversification of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nd with the expansion of state's activities, however, bearing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by the state for its nationals or private enterprises has been recognised in international case law and states practices. Also, this was codified in 2001 by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inishing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Yet,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state for private entities carrying out space activities including launching of satellites and space launch vehicles has been dealt with as an exception from state responsibility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As we have seen the successful launching of 'Falcon Heavy' by SpaceX which is an american private entity, the private activities in outer space are expanding to even as far as deep space such as Mars. In other words, the scope of the private activities is too enormous to deal with the activities, irrespective of general theories on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will be significant to see the constituent element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private activities in outer space from the point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without prejudice to provis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space law.

Key words : State responsibility, Private enterprises, Space activities, Attribution, Space object registration

* Ph.D. in Law, Senior Researcher,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